

1. 의결주문

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공무원보수규정」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총 보수 대비 1.4퍼센트 인상·조정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봉급에 반영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9. 00. ~ 9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봉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.

② 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봉급을 지급한다.

[별표 2]

검사의 봉급표(제7조 관련)

(월지급액, 단위: 원)

직명	호봉	봉급액
검찰총장		8,655,600
검찰총장 외의 검사	17	8,642,900
	16	8,626,400
	15	8,136,900
	14	7,649,900
	13	7,213,100
	12	6,844,400
	11	6,666,600
	10	6,457,500
	9	6,108,100
	8	5,691,700
	7	5,332,700
	6	4,995,700
	5	4,670,600
	4	4,343,300
	3	4,027,000
	2	3,711,300
	1	3,293,800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무부 검찰과	
연 락 처	(02) 2110 - 4209